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03
----------	-------

발의연월일 : 2026. 7. 10.

발 의 자 : 손명수 · 황명선 · 이연희
문정복 · 문진석 · 허성무
염태영 · 이해민 · 복기왕
홍기원 · 어기구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탄소중립 실현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배터리의 효율적 활용 및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배터리 가격이 전기자동차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소비자는 차량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하고, 배터리는 대여하여 사용하는 새로운 이용 방식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법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러한 배터리 대여형 사업모델의 도입이 어렵고, 관련 사업체계에 관한 규정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전기자동차 초기 구매 부담을 완화하

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 사업에 따라 대여를 목적으로 취득한 구동축전지를 대여 구동축전지로 정의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정의에 대여 구동축전지를 대여받아 장착한 자동차를 이용하는 자를 포함함(안 제2조제1호의8 및 제3호).
- 나. 대여 구동축전지에 대하여 그 대여 구동축전지를 제외한 자동차와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을 통해 소유권 변동의 득실변경의 효력이 생기도록 하며, 등록원부에도 해당 소유자를 표기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제6조 및 제7조제6항).
- 다.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의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시 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와 구동축전지 대여자는 그 사유, 신청일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 라. 대여 구동축전지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이 구동축전지 대여자에게도 시정조치 계획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 마. 구동축전지 대여 계약 변경·해지 등으로 대여 구동축전지를 탈거하는 경우 구동축전지 대여자가 성능평가를 받도록 함(제35조의13

제2항제5호).

바. 구동축전지 대여자는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에 대해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환불 이행시 대여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47조의2제1항 및 제47조의6제5항)

사. 자동차매매업자가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 거래를 알선하는 경우 대여 계약 현황 및 승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안 제58조제1항제5호).

아. 자동차제작자등이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수립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 승인 취소 근거도 마련함(안 제68조의26).

자. 구동축전지 대여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이고, 전담인력 등을 갖춘 후 구동축전지 대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구동축전지 대여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의2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1412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호의8 및 제1호의9를 각각 제1호의9 및 제1호의10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소유자 또는”을 “소유자[제5조제2항에 따른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를 이용하는 자(이하 “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또는”으로 한다.

1의8. “대여 구동축전지”란 제68조의27제1항의 구동축전지 대여자가 제68조의26제3항의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대여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구동축전지를 말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여 구동축전지를 대여받아 장착하는 자동차(이하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여 구동축전지를 제외한 자동차와 대여 구동축전지에 대한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여 구동축전지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한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등록된 대여 구동축전지와 그 식별번호가 다른 구동축전지를 장착하고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점검, 검사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대여 구동축전지 소유권을 분리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제6항 전단 중 “소유자”를 “소유자, 구동축전지 대여자(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의 변경등록 등) ① 제68조의27제1항에 따른 구동축전지 대여자(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가 변경등록을 신청하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를 말한다)는 등록된 대여 구동축전지에 관하여 소유자 변경, 대여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8조의27제1항에 따른 구동축전지 대여자는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에게 변경등록 신청일, 신청 사유, 변경등록에 따라 필요한 조치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② 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는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에 관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유권의 이전등록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제68조의27제1항에 따른 구동축전지 대여자에게 신청 사유, 신청 시기

등을 알리고 대여 구동축전지의 반납, 대여 계약의 승계 또는 해지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위하여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을 의뢰하려는 경우 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는 구동축전지 대여 계약 현황, 대여받은 대여 구동축전지의 반납 및 대여 계약의 승계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려야한다.

④ 그 밖에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의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4조의2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8조의27제1항에 따른 구동축전지 대여자의 요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유자”를 “소유자(대여 구동축전지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대여 구동축전지를 소유한 제68조의27제1항에 따른 구동축전지 대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에서 같다)”로 한다.

법률 제21412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의13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구동축전지 대여 계약의 변경·해지 등으로 해당 구동축전지가 더 이상 전기자동차등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구동축전지 대여자

법률 제21412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의16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전기자동차의 대여 구동축전지를 재제조 배터리로 교체하여 운행
하려는 경우: 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

법률 제21412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의18 중 “결과”를
“결과, 대여 구동축전지”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고, 제68조
의27제1항에 따른 구동축전지 대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
다)”로 한다.

제47조의4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는 제68조의27제1항에 따른 구동축전지
대여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
동축전지 대여자는 교환·환불 중재 절차에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수 있다.

제47조의6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교환·환불 중재에 따라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에 관한 환불이
판정된 경우에는 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와 제68조의27제1항에 따
른 구동축전지 대여자의 구동축전지 대여 계약은 환불의 이행과 동
시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58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3조의2제3항의 구동축전지 대여 계약 현황 및 승계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7장의5(제68조의26 및 제68조의27)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의5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 사업 등

제68조의26(사업계획 승인 및 취소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대여 구동축전지를 장착하여 해당 전기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를 제작등을 하거나 변경 또는 판매하는 사업(이하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 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대상 차종 및 판매 예정 대여 구동축전지의 특성, 제원 정보 등에 관한 사항
2.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 및 대여 구동축전지에 대한 제32조의2제1항의 사후관리 및 교환·환불 계획 등 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의 편익과 보호에 관한 사항
3. 구동축전지 대여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구동축전지 대여자, 부품제작자등과 연계한 대여 구동축전지 운영·처분 및 관리 방식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제2조제1의8의 사용후 배터리 및 같은 조 제1의9의 재제조 배터리를 활용한 운영·처분 방식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안전관리, 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구동축전지 대여에 따른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고 구동축전지의 체계적인 활용과 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③ 자동차제작자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사업계획 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후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자동차제작자들은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이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을 명한 경우(이하 “사업계획 시정명령”이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이하 “사업계획 승인 취소”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 승인 또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업계획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자동차제작자등이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 사업의 중단 등을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등은 지체없이 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에 대한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포함한다)의 대상이 되는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를 판매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와 제68조의27제1항에 따른 구동축전지 대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대여 구동축전지 교체가 필요한 경우 그 방법과 절차
2.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 매매·폐차가 필요한 경우 그 대여 구동축전지의 처리 방법
3. 대여 구동축전지 교환·환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8조의27(구동축전지 대여자 사업요건 등) ① 대여 구동축전지를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대여하려는 자(이하 “구동축전지 대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의2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동축전지 대여 관련 전담인력 및 시설(대여 구동축전지의 이력관리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을 갖출 것

② 구동축전지 대여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유와 시정계획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동축전지 대여자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구동축전지 대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동축전지 대여자는 지체없이 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의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동축전지 대여자가 구동축전지를 대여할 때에는 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에게 대여약관, 대여기간 및 비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률 제21412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4조제1항 본문 중 “제51조의4제1항 또는 제66조제1항”을 “제51조의4제1항, 제66조제1항, 제69조의26제5항 또는 제68조의27제3항”으로 하고, “이륜자동차지정정비

사업자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자”를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사업자,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구동축전지 대여자”로 하며, “사업정지처분(이하 “정지처분“이라 한다)”를 “ 사업정지처분, 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이하 “정지·취소처분”이라 한다)”로 하고, “정지처분”을 “정지·취소처분”으로 한다.

법률 제21412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4조제1항 단서 중 “정지처분”을 “정지처분,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 사업과 관련된 자동차 제작자등의 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 또는 구동축전지 대여자의 사업정지 처분”으로 한다.

제75조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68조의26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취소

8. 제69조의27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제78조의2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68조의26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또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자

4. 제68조의26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또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 사업 관련 업무를 한 자

제79조제1호 중 “제5조”를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84조제2항에 제4호의4 및 제4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4. 제68조의26제7항을 위반하여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에 관한 정보를 구동축전지 대여자 또는 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4의5. 제68조의27제4항을 위반하여 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에게 대여약관, 대여기간 및 비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제8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2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원부에 등록된 대여 구동축전지와 그 식별번호가 다른 구동축전지를 장착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제5조에”를 “제5조제1항에”로 한다.

②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6제1항제4호 중 “제5조에”를 “제5조제1항에”로 한다.

③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중 “제5조와”를 “제5조제1항과”로 한다.

④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6제1항제4호 중 “제5조에”를 “제5조제1항에”로 한다.

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제5조”를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⑥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제5조에”를 “제5조제1항에”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412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의7. (생 략) <u><신 설></u> <u>1의8. · 1의9.</u> (생 략) 2. (생 략) 3.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u>소 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u>로부 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 14. (생 략) 제5조(등록) (생 략) <u><신 설></u>	법률 제21412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정의) ----- -----. 1. ~ 1의7. (현행과 같음) <u>1의8. “대여 구동축전지”란 제6 8조의27제1항의 구동축전지 대여자가 제68조의26제3항의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대여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구동축전 지를 말한다.</u> <u>1의9. · 1의10.</u> (현행 제1호의8 및 제1호의9와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u>소 유자[제5조제2항에 따른 구동 축전지 대여 자동차를 이용하 는 자(이하 “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라 한다)를 포함한다]</u> <u>또는 ---.</u> 4. ~ 14. (현행과 같음) 제5조(등록)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② 대여 구동축전지를 대여받아</u>

	<u>장착하는 자동차(이하 “구동축 전지 대여 자동차”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여 구동축전지를 제외한 자동차와 대여 구동축전지에 대한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③ 제2항에 따라 대여 구동축전지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한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등록된 대여 구동축전지와 그 식별번호가 다른 구동축전지를 장착하고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점검, 검사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u><후단 신설></u>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 ----- -----<u>. 제5조제2항에 따라 대여 구동축전지 소유권을 분리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
제7조(자동차등록원부) ① ~ ⑤ (생략) ⑥ 등록원부에는 등록번호, 차	제7조(자동차등록원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따른 구동축전지 대여자는 변경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
체없이 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
에게 변경등록 신청일, 신청 사
유, 변경등록에 따라 필요한 조
치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② 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는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에 관하
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유권
의 이전등록 또는 제13조제1항
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에 지체없이 제68조의27제1항
에 따른 구동축전지 대여자에게
신청 사유, 신청 시기 등을 알리
고 대여 구동축전지의 반납, 대
여 계약의 승계 또는 해지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조치하
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위
하여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구동
축전지 대여 자동차의 매도 또
는 매매를 알선을 의뢰하려는
경우 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는
구동축전지 대여 계약 현황, 대
여받은 대여 구동축전지의 반납

	<u>및 대여 계약의 승계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려야한다.</u> <u>④ 그 밖에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의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u>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 ----- ----- ----- -----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u>제68조의27제1항에 따른 구동축전지 대여자의 요청</u>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및 제33조에서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① ----- ----- ----- ----- -----

같다)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제작 결함의 내용과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 계획 이행 방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다.

1. ~ 3. (생략)
- ② ~ ⑯ (생략)

----- 소유자
(대여 구동축전지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대여 구동축전지를 소유한 제68조의27제1항에 따른 구동축전지 대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에서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 ② ~ ⑯ (현행과 같음)

법률 제21412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의13(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① (생략)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 는 자가 성능평가를 받아야 한 다. 이 경우 전기자동차등으로 부터 사용후 배터리를 분리한 후 성능평가를 받을 수 있다. 1. ~ 4. (생략) <u><신설></u> ③ ~ ⑤ (생략) 법률 제21412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의16(재제조 배터리가 장착 된 전기자동차등의 안전검사) ① 전기자동차등에 재제조 배터 리를 장착하여 판매 또는 운행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국토교통부령으	법률 제21412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의13(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구동축전지 대여 계약의 변 경·해지 등으로 해당 구동축 전지가 더 이상 전기자동차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구동축 전지 대여자</u> ③ ~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21412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의16(재제조 배터리가 장착 된 전기자동차등의 안전검사) ① ----- ----- ----- -----
--	---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
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이하
“유통전 안전검사”라 한다)
를 받아야 한다.

1. (생략)

<신설>

2. (생략)

② ~ ⑥ (생략)

법률 제21412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의18(사용후 배터리 등의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구동축전지
의 생산, 성능평가 결과 및 재제
조 배터리의 장착 등에 관한 이
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
불 요건)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
여 판매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

-----.

1. (현행과 같음)

2. 전기자동차의 대여 구동축전
지를 재제조 배터리로 교체하
여 운행하려는 경우: 구동축전
지 대여 이용자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법률 제21412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의18(사용후 배터리 등의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결과, 대여 구
동축전지 -----

-----.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
불 요건) ① -----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47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 ① ~ ⑤ (생략)

<신 설>

제47조의6(중재 판정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방법) ① ~ ④ (생략)

----- 제외하
고, 제68조의27제1항에 따른 구
동축전지 대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는
제68조의27제1항에 따른 구동
축전지 대여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
다. 이 경우 구동축전지 대여자
는 교환·환불 중재 절차에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수
있다.

제47조의6(중재 판정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종사원을 포함한다)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신 설>

② ~ ⑩ (생략)

<신 설>

<신 설>

⑤ 교환·환불 중재에 따라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에 관한 환불이 판정된 경우에는 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와 제68조의27제1항에 따른 구동축전지 대여자의 구동축전지 대여 계약은 환불의 이행과 동시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13조의2제3항의 구동축전
지 대여 계약 현황 및 승계 절
차 등에 관한 사항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7장의5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
사업 등

제68조의26(사업계획 승인 및 취

소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대
여 구동축전지를 장착하여 해당
전기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를 제작등을 하거나
변경 또는 판매하는 사업(이하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 사업”
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대상 차종 및 판매 예정
대여 구동축전지의 특성, 제원
정보 등에 관한 사항

2.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 및
대여 구동축전지에 대한 제32
조의2제1항의 사후관리 및 교
환·환불 계획 등 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의 편익과 보호에
관한 사항

3. 구동축전지 대여에 따른 안
전관리 강화 지원에 관한 사
항

4. 구동축전지 대여자, 부품제작

자등과 연계한 대여 구동축전지 운영·처분 및 관리 방식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제2조 제1의8의 사용후 배터리 및 같은 조 제1의9의 재제조 배터리를 활용한 운영·처분 방식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안전관리, 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구동축전지 대여에 따른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고 구동축전지의 체계적인 활용과 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③ 자동차제작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사업계획 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후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자동차제작자등은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으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이하 “사업계획 변경 승
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의 사업계획을 변경하
려는 경우. 다만,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을 명한
경우(이하 “사업계획 시정명
령”이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
작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
(이하 “사업계획 승인 취소”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는 승인을 취소하
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 승인 또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업계획 시정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이
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자동차제작자등이 구동축전
지 대여 자동차 사업의 중단
등을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자동차제작자
등은 지체없이 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에 대한 피해 방지 방안
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제
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제4
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승인
을 포함한다)의 대상이 되는 구
동축전지 대여 자동차를 판매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
와 제68조의27제1항에 따른 구
동축전지 대여자에게 제공하여
야 한다.

<신 설>

1. 대여 구동축전지 교체가 필
요한 경우 그 방법과 절차

2.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 매
매·폐차가 필요한 경우 그
대여 구동축전지의 처리 방법

3. 대여 구동축전지 교환·환불
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8조의27(구동축전지 대여자 사
업요건 등) ① 대여 구동축전지
를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대여
하려는 자(이하 “구동축전지 대
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의2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
동축전지 대여 관련 전담인력
및 시설(대여 구동축전지의
이력관리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을
갖출 것

② 구동축전지 대여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유와 시정계획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동축전지 대여자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구동축전지 대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동축전지 대여자는 지체없이 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의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동축전지 대여자가 구동축전지를 대여할 때에는 구동축전지 대여 이용자에게 대여약관, 대여기간 및 비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률 제21412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412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4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 제35조의14제2항, 제45조의3제1항, 제47조제5항, <u>제51조의4제1항</u> 또는 <u>제66조제1항</u> 에 해당되어 해당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성능평가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u>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u> , <u>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u> 또는 <u>자동차관리사업자</u> 에 대한 업무 또는 <u>사업정지처분</u> (이하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정지처분이 일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와 관련된 종합검사대행자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제74조(과징금의 부과) ① ----- ----- ----- ----- ----- <u>제51조의4제1항</u> , <u>제66조제1항</u> , <u>제68조의26제5항</u> <u>또는 제68조의27제3항</u> ----- ----- ----- ----- <u>이륜</u> <u>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u> , <u>자동차</u> <u>관리사업자</u> , <u>자동차제작자등</u> <u>또</u> <u>는 구동축전지 대여자</u> ----- <u>사업정지처분</u> , <u>사업계획 승인</u> <u>취소 처분</u> (이하 “정지·취소처 <u>분”이라 한다</u>)----- ----- <u>정지·취소처분</u> ----- ----- ----- <u>정지</u> <u>·취소처분</u> ----- ----- ----- ----- <u>정지처분</u> , <u>구동축전지</u> <u>대여 자동차 사업과 관련된 자</u>

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제7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6의2. (생략) <u><신설></u> <u><신설></u> 7. (생략) 제7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u><신설></u> <u><신설></u>	<u>동차제작자등의 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 또는 구동축전지 대여자의 사업 정지 처분-----.</u>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75조(청문) ----- ----- ----- -----. 1. ~ 6의2. (현행과 같음) 7. <u>제68조의26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취소</u> 8. <u>제69조의27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u> 9. (현행 제7호와 같음) 제78조의2(벌칙) ----- ----- -----. 1. 2. (현행과 같음) 3. <u>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68조의26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또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자</u> 4. <u>제68조의26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또는 사</u>
--	---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 1의2. ~ 19. (생략)

제84조(과태료) ①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1의2. ~ 4의3. (생략)

<신설>

<신설>

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 사업 관련 업무를 한 자

제79조(벌칙) -----

-----.

1. 제5조제1항-----

- 1의2. ~ 19. (현행과 같음)

제8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② -----

-----.

1의2. ~ 4의3. (현행과 같음)

4의4. 제68조의26제7항을 위반하여 구동축전지 대여 자동차에 관한 정보를 구동축전지 대여자 또는 구동축전지 대여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4의5. 제68조의27제4항을 위반하여 구동축전지 대여이용자에게 대여약관, 대여기간 및 비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

5. · 6.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설></u> <u>1. · 2.</u> (생략) 3. ~ 11. (생략) ④ ~ ⑥ (생략)	<u>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u> 5. · 6. (현행과 같음) ③ ----- ----- -----. <u>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원부에 등록된 대여 구동축전지와 그 식별번호가 다른 구동축전지를 장착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u> <u>2. · 2의2.</u>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3. ~ 11.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	---